

## II. 윤리규칙

회사 및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1. 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지

- 1.1 모든 경쟁은 법과 건전한 사회관습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.
- 1.2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(이하 "거래선 등"이라 한다)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.
  -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경쟁업체의 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1.3 성별, 학력, 종교,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다른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성희롱 등 타인을 괴롭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2. 선물 및 접대

- 2.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,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다만, 그 선물,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2 임직원은 거래선 등의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.  
다만,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3. 투명한 경영

- 3.1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
- 3.2 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- 3.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,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3.4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,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### 4.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

- 4.1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해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4.2 회사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- 4.3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.
- 4.4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5. 시행 및 집행

- 5.1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회사의 임원들을 통하여 시행하고 집행한다.
- 5.2 임직원들 모두는 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을 준수한다.